

영화인 노후복지지원 방안에 관한 논의¹⁾

A Study on an Old age Welfare Support System for People in the Film Industry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영화인들은 열악한 제작환경, 낮은 임금에 직면하고, 공적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적절한 노후대비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고령 영화인들의 경우 일부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 수준은 매우 미약하며, 충분히 노후대책을 준비하지 못함에 따라 정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 영화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영화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조사를 기초로 지속적인 영화인에 대한 복지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영화인을 위한 복지지원 체계는 첫 번째는 한국영화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화인 복지지원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두 번째는 단계적으로 고령영화인뿐 아니라 청장년층에게까지 복지지원제도가 확대되고 청장년 영화인들이 안정적으로 영화산업에 종사하고 장기적으로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1.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영화산업은 지난 10여 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성장세는 2007년 영화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 많은 스크린 수를 확보하며 영화를 개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고, 주요 국제영화제에서도 주요 부문 수상을 하는 등 괄목할 정도의 성장을 이루었다. 반면에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영화인들은 열악한 제작환경에 처하여 낮은 임금에 직면하고, 공적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어 적절한 노

후대비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즉 부정기적인 고용계약과 근로활동에 따른 안정적인 임금 획득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4대 사회보험으로부터도 소외되어 있어 최후의 사회안전망 중의 하나인 연금수급권조차 획득이 어려운 실정이다. 일부 고령 영화인들의 경우 일부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 수준은 매우 미약하며, 또한 영화인들의 경우 충분히 노후대책을 준비하지 못함에 따라 정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영화인 실태조사를 통해 고령 영화인들에 대한 복지욕구를 파

악하고 이를 기초로 지속적인 고령 영화인들에 대한 복지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영화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성을 통해 청장년기의 영화인들이 안정적으로 영화산업에 종사하고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기대할 수 있다.

2. 영화인 지원제도 도입 필요성

영화인 복지지원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거는 다음의 두 가지 점에 기반하고 있다. 첫째, 영화를 포함한 문화예술은 사회 및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는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예술 분야에서 창조적 행위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작품)를 생산하고 배포함으로써 문화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은 국가의 정책적 노력을 통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영화인을 포함한 문화예술인들은 직업적 특성, 즉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처우로 인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는 기존의 사회보장체계로는 충분한 사회보장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이들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사회보장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현 고령영화인들의 경우 1960, 70년대의 열악한 문화·경제·환경적 토대위에서도 지금과 같이 세계에 필적할 만한 문화예술 작품들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은 문화예술인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령

문화예술인들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노력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인식은 매우 낮은 상태이며, 지원을 받는다 해도 일부의 계층에 한정되어 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현 고령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발전 기여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인정과 노후 생활의 안정적 보장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문화예술인의 지위 및 사회보장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은 UN 산하 국제기구인 유네스코(UNESCO)가 1980년 10월 27일 제1차 총회에서 “문화예술인의 지위에 관한 권고(UNESCO Recommendation on the Artists)”를 채택하면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동 권고는, “예술의 정력과 활력은 문화예술인의 개별적, 집단적 복지에 좌우되며, 사회보장에 관한 국제노동기구의 일부 기준이 문화예술인의 위신을 떨어뜨리거나 문화예술활동의 특수한 여건으로 고려하지 않고 문화예술인 혹은 특정부류의 문화예술인을 제외하는 내용이 있으므로, 이들 기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여타 기준으로 이를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다수 회원국에서의 문화 예술인들의 상황은 특히 인권, 경제적, 사회적 여건 및 그들의 고용조건과 관련해서 불안한 실정인 바, 이를 시정하여 재능을 개발하고 꽃피우는데 필요한 여건과 지역사회와 국가의 문화 정책 및 문화발전 활동의 계획과 수행, 그리고 생활의 질 향상에 문화예술인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적절한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공공 당국의 행동이 절실하다.”는 내용의 전문을 담고 있다²⁾. 결국 동 권고의 핵심적인 내용은 문화

1) 본 원고는 한국영화인복지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한 “영화인복지정책 효율화방안”의 주요 연구내용을 소개하는 것이다.

2) 최진욱(2007), 한국영화산업 실업급여제도 개선 방안.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포럼 자료집, 예술정책포럼.

예술인들이 사회 및 문화 발전에 대한 공로를 고려하여 이들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³⁾

한편, EU(2006)는 EU 회원국 내 문화예술인의 지위에 관한 연구를 통해, 각 회원국이 과거의 조치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구체적·실용적인 일련의 조치들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각 회원국들이 현재 문화예술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법적·직업적 문제를 다루는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조치들을 검토하여 이것이 자국의 법 및 정치 체계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⁴⁾.

4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설계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는 최근에 와서 제도적 완결성을 갖추기는 하였으나, 사회보장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사회보장체계의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는 직종별 구분이 없는 제도로서 정규직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대부분의 문화예술인들은 고용형태 및 종사지위에 있어 비정규 일용직 임금근로자이거나 자영업자로 분류됨으로써, 현행 사회보험제도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기존 사회보험제도 체계에서 문화예술인들은 임금근로자로서 사업장 가입자이거나 혹은 자영업자로서 지역가입자로 편입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될 수 있는 문화예술인은 소수에 불과하며 자영업자 신분의 문화예술인들은 임금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보험료에 대한 지불 능력이 담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3. 영화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분석

'60년대 이후 '90년대까지 활동한 고령의 영화분야 종사자들의 경우 '90년대 이전 복지제도의 미비로 은퇴후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60세 이상 고령 영화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과거 및 현재의 복지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고령 영화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도출하는데 참고하고자 한다.

조사는 한국영화인복지재단의 도움으로 고령 영화인 중 총 400명의 명단을 확보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297명이 조사 완료되었다. 종사 유형을 살펴보면, 배우(25.6%), 감독(22.2%), 기술(13.8%) 순으로 나타났으며, 음악분야가 7명(2.4%)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조사된 영화인은 남성이 91.9%, 여성이 8.1%로 남성이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조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약 70세로 조사되었으며, 70세를 넘는 영화인이 전체 41.4%로 나타났다.

다음은 66~70세가 34.7%, 65세 이하는 23.9%로 70세 이하는 58.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혼인상태의 경우는 조사대상자의 76.1%가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사별 또는 이혼한 경우는 각각 9.1%, 9.8%로 나타

났다. 조사대상자들에 대한 경제활동 상태를 살펴보면 60세 이상임에도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제활동대상자의 대부분은 자영업(21.2%)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이외에 상용·임시 일용직에도 5.7%, 6.1%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연령이 60대 이상이므로 대상자의 과반수인 57.2%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나타났다. 근로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현재까지도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38.2%였으며, 비영화산업근로자는 62.8%로, 비영화산업에 주로 근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 대상자 일반사항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백분율
대상자유형	감독	66	22.2
	촬영	21	7.1
	조명	23	7.7
	배우	76	25.6
	시나리오	25	8.4
	기획	38	12.8
	기술	41	13.8
	음악	7	2.4
	성별	남자	273
여자	24	8.1	
연령 (평균:70.1세)	65세 이하	71	23.9
	66~70세	103	34.7
	70세 초과	123	41.4
혼인상태	유배우	226	76.1
	별거	7	2.4
	사별	27	9.1
	이혼	29	9.8
	미혼	8	2.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근로자	17	5.7
	임시직 근로자	18	6.1
	일용직 근로자	6	2.0
	고용주	4	1.3
	자영업자	63	21.2
	무급자원봉사자	2	0.7
	실업자	17	5.7
비경제활동인구	170	57.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영화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표 2. 영화산업근로종사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백분율
영화산업 근로종사	영화산업근로	42	38.2
	비영화산업근로	68	62.8
	소 계	110	101.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영화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2007년 대비 일반인 및 가구와 고령영화인 및 가구의 빈곤수준을 살펴보면 절대빈곤의 경우 일반인 및 가구와 고령영화인 및 가구 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상대빈곤을 기준으로 살펴볼 경우, 가구를 기준으로 일반가구에 비해 영화인가구의 상대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중위 40%에서는 일반가구가 16.8%인 반면에 영화인 가구는 18.2%로 나타났다. 상대빈곤선이 증가할수록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⁵⁾.

3) 문화예술인에 대한 별도의 사회보장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월적 지위(장점)에 기반한 접근(merit-based approach)'이라고 칭할 수 있으며(EU, 2006), 이는 Gilbert & Terrel. (2006)의 사회복지 자원 할당의 네 가지 원칙 중 '보상(Compensation)에 근거한 할당'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음(박경일(2008).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4) EU. (2006). The Status of Artists in Europe.

표 3. 고령 영화인 빈곤수준

(단위: %)

구분		절대빈곤 미만	상대빈곤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일반	인구기준	10.8	12.0	16.5	22.2
	가구기준	14.1	16.8	21.8	27.7
영화	인구기준'	10.8	13.3	19.6	31.2
	가구기준	13.5	18.2	27.3	40.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영화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가구기준으로 최저생계비 수준별로 일반가
구 및 영화인가구의 변화를 살펴보면 최저생계
비 미만에서는 일반가구의 빈곤수준이 높게 나
타났지만 최저생계비가 증가할수록 영화인가
구의 빈곤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고령영화인가구의 경우 절대빈곤(최저생계비
미만)을 기준으로 일반가구에 비해 빈곤수준은
다소 낮지만, 전체적인 빈곤수준을 고려 시 영
화인가구가 빈곤층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최근 3년간 경제적 이유로 인한 생활상의 어
려움을 고령 영화인 전체와 이중 최저생계비 2

배미만 영화인들을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끼
니를 거른 경험이 있는 경우는 3.4%로 상대적
으로 많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저생계비 2배미
만 계층의 경우 전체 응답자보다 끼니 거른 경
험이 더 많은(6.5%)것으로 조사되었다. 집세가
밀리거나 집세를 낼 수 없어서 이사한 경험이
있는 고령 영화인은 24.5%로 나타났다. 최저생
계비 2배미만의 영화인의 경우 경제적 이유로
인해 이사한 경험이 31.5%로 전체 고령영화인
보다 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과금
(사회보험료, 전기세, 전화세, 수도세)을 기한내
납부하지 못한 경험은 전체 20.9%로 나타났다.

표 4. 고령 영화인가구 빈곤수준(최저생계비 수준별, 가구기준)

(단위: %)

구분	최저생계비 미만	최저생계비×1.2미만	최저생계비×1.5미만	최저생계비×2미만
일반가구	14.1	18.1	24.8	36.8
영화인가구	13.5	18.5	29.6	46.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영화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5) 분석결과와 의 경우 해석상의 여지를 둘 수 있음. 즉 영화인 조사 표본이 60세 이상의 고령영화인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는 점에서 일반인 및 가구도 60세 이상의 자료를 기초로 분석할 필요도 있음. 그러나 영화인 조사 상에는 60세 이외의 가구원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구분하는 것이 편의를 유발할 수 있으며, 또한 가구소득을 기초로 비교한다는 점에서 정확히 60세 이상만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도 한계를 지닐 수 있음.

이로 인해 전기, 전화, 수도가 끊겨본 적이 있다
고 응답한 자는 8.1%로 나타났다. 최저생계비 2
배 미만 고령 영화인들의 공과금 미납경험은
25.4%, 전기, 전화 등이 끊겨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0.1%로 나타나 전체 고령영화

인보다 더 많았다.

자녀 학비를 한달 이상 주지 못한 경험을 한
가구는 12.7%로 나타났다. 최저생계비 2배미만
계층의 경우 전체보다 학비 미납 경험이 약 두
배(21.1%) 많았다. 겨울에 경제적 이유로 난방

표 5. 고령영화인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어려운 생활 경험

(단위: 명, %)

구분		전체		최저생계비 2배미만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가족이 끼니거른 경험	있다	10	3.4	9	6.5
	없다	287	96.6	129	93.5
	소 계	297	100.0	138	100.0
집세연체 등 이유로 이사경험'	있다	26	24.5	17	31.5
	없다	80	75.5	37	68.5
	소 계	106	100.0	54	100.0
공과금 미납경험	있다	62	20.9	35	25.4
	없다	235	79.1	103	74.6
	소 계	297	100.0	138	100.0
전기, 수도 등이 끊긴 경험	있다	24	8.1	14	10.1
	없다	273	91.9	124	89.9
	소 계	297	100.0	138	100.0
자녀 학비 미납 경험 ²⁾	있다	7	12.7	4	21.1
	없다	48	87.3	15	78.9
	소 계	55	100.0	19	100.0
난방 못한 경험	있다	27	9.1	22	15.9
	없다	270	90.9	116	84.1
	소 계	297	100.0	138	100.0
병원 못간 경험	있다	35	11.8	24	17.4
	없다	262	88.2	114	82.6
	소 계	297	100.0	138	100.0
가구원 중 신용불량경험	있다	65	21.9	37	26.8
	없다	232	78.1	101	73.2
	소 계	297	100.0	138	100.0

주: 1) 비해당(주거형태가 '자녀'이거나 '무상'인 경우) = 191
2) 비해당(자녀가 '미취학'이거나 '대학원생'인 경우) = 24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영화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을 못 한 적이 있는 고령 영화인 가구는 9.1%로 나타났다. 최저생계비 2배미만 계층 중 경제적 이유로 난방 못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15.9%로 전체 영화인들보다 높았다. 영화인 본인 또는 가구원이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을 한 가구는 11.8%였다. 반면 최저생계비 2배미만 계층 중 돈이 없어 병원을 못 간 적이 있는 비율은 15.9%였다.

영화산업에 종사하면서 노후 대비를 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영화 산업에 종사하면서 노후대비를 한 영화인은 12.8%로 나타났다.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주된 이유는 노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42.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제적 여유(35.5%), 자녀 교육 또는 부양(20.8%)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대비의 주요방법은 부동산과 개인저축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타의 방법으로 보험·개인연금, 주식, 자영업·개인사업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지원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2007년 1년 동안 받은 보조금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국민기초

생활보장급여의 경우 연간 284.90만원의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동부양)수당은 연간 28.88만원의 지원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로연금은 연간 41.25만원이었으며, 노인교통비는 13.82만원으로 나타났다.

고령 영화인을 대상으로 복지지원에 대한 욕구를 살펴본 결과 1순위에서는 영화인들은 생

계비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의료비 및 주거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저생계비 2배미만 계층만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생계비에 대한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의료비, 주거비 지원 욕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 고령영화인 영화산업 종사시 노후대비

(단위: 명, %)

구분	예	전체		최저생계비 2배미만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노후대비 경험	예	38	12.8	12	8.7
	아니오	259	87.2	126	91.3
	소계	297	100.0	138	100.0
노후대비 방법 ¹⁾	저축	9	23.7	3	25.0
	보험·개인연금	4	10.5	1	8.3
	주식(펀드)	1	2.6	1	8.3
	부동산	19	50.0	4	33.3
	자영업·개인사업	5	13.2	3	25.0
	영화산업투자	-	-	-	-
	자녀부양	-	-	-	-
	소계	38	100.0	12	100.0
노후대비 못한 이유	노후대비를 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92	35.5	44	34.9
	자녀교육 및 부양 때문	54	20.8	24	17.4
	노후대비를 생각하지 못해서	111	42.9	57	45.2
	가구의 의료비지출 때문	2	0.8	1	0.8
	소계	259	100.0	126	100.0

주: 1) 국민연금 등 공적 사회보장제도 제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영화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표 7. 2007년 1년 동안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형태 및 연간금액

(단위: 명, 만원)

구분	빈도	금액	표준편차	
보조금 형태 및 금액	기초생활보장급여	20	284.90	190.38
	장애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8	28.88	13.95
	경로연금	20	41.25	19.55
	노인교통비	217	13.82	2.53
	국가유공자 보조금	19	19	87.79
	문화관광부 보조금	3	3	18.00
	기타금액	42	42	29.4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영화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표 8. 고령영화인 복지지원 욕구

(단위: 명, %)

구분	전체			최저생계비 2배미만			
	1순위	2순위	순위 ¹⁾	1순위	2순위	순위 ¹⁾	
지원 욕구	생계비	184(62.0)	41(13.8)	1	103(74.6)	24(18.3)	1
	주거비	11(3.7)	47(15.8)	3	6(4.3)	29(22.1)	3
	자녀교육비	8(2.7)	6(2.0)	6	4(2.9)	2(1.5)	5
	의료비	45(15.2)	114(38.4)	2	17(12.3)	64(48.9)	2
	직업알선 및 재취업훈련	10(3.4)	26(8.8)	4	4(2.9)	12(9.2)	4
	사업·창업자금 융자	10(3.4)	7(2.4)	5	2(1.4)	-	6
	기타	29(9.8)	-	-	2(1.4)	-	-

주: 1) 중요순위의 가중치 적용방법 산식 = 1순위 응답자 수 ×1.5 + 2순위 응답자 수×1 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영화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4. 고령 영화인 복지지원 방안

고령영화인 복지지원 사업의 목적은 고령 영화인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영화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영화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복지요구를 파악하고 조사를 기초로 지속적인 영화인에 대한 복지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영화인을 위한 복지지원 체계는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현재의 여건을 감안하여 한국영화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화인 복지지원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고령영화인뿐 아니라 청장년층에게까지 복지지원제도가 확대되고 이를 통해 청장년 영화인들이 안정적으로 영화산업에 종사하고 장기적으로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1) 현 고령영화인 복지지원제도 확대방안

고령영화인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지원체계는 현행 한국영화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와 국가에서 운용하고 있는 복지지원제도간의 연계성을 통해 다층적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한국영화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로금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생활지원제도(현금 및 현물지원)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현금지원제도로는 생활비지원

을 현물지원으로는 육구별 지원으로 의료비, 주거비 및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text{영화인 생활지원} = \text{공로금} + \text{생계지원} + \text{현물지원(의료와 주거)}$$

(보편성) (보충성) (육구별)

공로금의 경우 영화산업에 일정기간 종사한(20년 혹은 30년) 영화인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급여로서 보편성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할 수 있다. 생계지원의 경우 본인의 노력과 공로금 등을 통해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고령영화인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보충적인 급여성격을 지니고 있다. 현물지원의 경우 모든 고령영화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개별 육구에 맞추어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지급됨에 따라 육구별 급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위와 같은 각 급여제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다층적으로 지원방안을 고려시, 고령영화인을 위한 복지제도의 1층으로는 국가로부터 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 등)을 받고 있는 영화인의 경우 우선적으로 국가 지원을 원칙으로 하여 지원받은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준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국가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선 생계지원을 원칙으로 동 대상자의 경우에는 현금과 물론 현물을 동시에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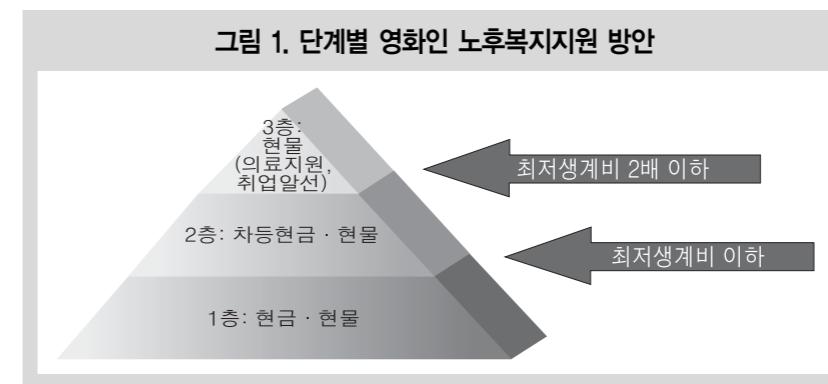
2층은 최저생계비 이상이고, 최저생계비 2배 이하인 경우, 연금과 본인의 근로를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을 감안하여 차등적으로 필요에 따라 현금 혹은 현물(의료지원)을 지원하도록 한다. 3층은 최저생계비 2배 이상의 고령영화인에

대해서는 현금 혹은 현물의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본인의 근로를 통해 소득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근로가 가능한 연령대의 고령영화인을 지원하기 위한 재취업·직업알선 등을 도모할 수 있는 전담부서의 확충이 필요하다. 단 과도한 의료비 부담의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한다.

적인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영화산업에의 종사기간(공로성 인정)은 현행 영화인복지재단에서 공로금 선정기준이 되는 30년 이상을 우선 적용하며, 하위 단위로 20년 이상(설문조사 결과 반영)을 추가 설정한다.

고령영화인을 위한 생활지원제도의 관리운영은 단기적으로는 현재와 같이 한국영화인복

지재단에서 운영한다. 중장기적으로 제도 및 대상자가 확대되는 경우 관리운영에 대한 추가적인 인력과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복지재단의 확대 개편



급여수준은 정부가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를 기초로 하여 대상자들의 소득 및 지출과 영화산업에의 종사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단계적 지원금액을 산정하도록 한다. 최저생계비 이하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과 본인의 소득을 기초로 영화종사기간(공로기간)을 가중하여, 부족한 금액에 대해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최저생계비 이상에서 최저생계비 2배미만의 대상자에게는 감액된 현금 지원과 현물지원(의료비 지원 중심)을 하도록 한다.

복지지원의 대상자는 연령, 영화산업에의 종사기간, 본인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선정하도록 하되, 65세 이상 고령영화인을 대상으로 본인의 소득 및 재산을 우선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 영화산업에의 종사기간에 따라 최종

이 필요하며, 재단의 확대개편에는 영화인들에 대한 합의와 논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확대를 통해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청장년의 영화인들도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

2) 장기적 영화인 복지지원제도 계획(안)

영화인을 위한 복지지원제도는 장기적으로 청장년층에게는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이를 통한 안정적 생활의 가능성 확보, 고령 영화인에게는 노후생활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목적하에 영화인을 위한 전생애적인 복지지원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 영화인 복지지원제도의 경우 3단계로 나누어 복

지지원방안을 강구하며, 예산과 관리조직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단계는 앞에서 살펴본 현 고령 영화인을 위한 복지지원확대제도와의 연계성을 의미한다. 우선적으로 고령영화인에 대한 복지지원 제도를 확고하게 함으로써 현 고령영화인에게는 생활안정을 청장년 영화산업 종사자들의 경우 노후생활에 대한 안정과 기대를 지니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생애주기적인 측면에서 장년층에 해당되며 연령으로는 40~59세까지의 영화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동 연령대의 장년층의 경우 사회적으로는 중간그룹 혹은 관리자 그룹에 속하는 세대이며, 가족 내에서는 중요한 소득원,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세대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세대에게는 무엇보다 소득의 안정적 확보와 연령 특성에 따른 주거 및 자녀교육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앞선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장년층을 위한 복지제도는 기존 복지제도(EITC 등)와의 연계와 더불어 소득확보와 주거 및 자녀교육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청년층(20~39세)에 해당되며, 청년층을 위한 복지지원제도로는 영화에 대한 숙련된 세대가 아니고 결혼 전 혹은 결혼 후 자녀가 어리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혼 전 청년층의 경우에는 사회보험료의 지속적 보장과 교육을 통해 자기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확보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3) 간접적 복지지원 방안

고령 영화인을 지원하기 위한 간접적인 제도로는 의료지원과 취업 및 직업알선을 들 수 있다. 우선 고령영화인 복지대상자로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현금을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의료비에 대한 지출이 발생시 본인부담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최저생계비 이상 대상자의 경우에는 의료비에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본인부담액이 발생시 초과 금액에 대해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저생계비 이상, 2배미만 대상자의 경우 압 등의 고액 질환으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클 경우 일정수준(약 5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며 5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일부 금액(50%)을 지원하게 된다. 단, 모든 대상자에 대해 부담금액의 총 상한액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 의료비 지원 대상 진료는 단순히 건강증진(치아교정, 건강보조식품 등)을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가 아닌 치료와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직접적인 소득보장방안으로서 고령 영화인 스스로 지속적으로 영화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내에 고령영화인 직업훈련 및 재취업 알선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여 노동부의 고용안정 프로그램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고령영화인에 대한 재취업훈련은 단순히 부처간의 연계만을 통해 이루지기 보다는 고령영화인들이 원하는 직업형태 및 직종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지원을 위해 영화진흥위원회와 영화산업노조, 각 영화관련 협회 등의 긴밀한 협조

가 필요한 부분이다. 본인의 희망 시 영화산업이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에도 안정적인 소득보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4) 재원조달

위와 같은 영화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지원제도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원마련 방안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영화산업의 경우 다른 문화예술인들에 비해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원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영화발전기금의 활용과 영화인 스스로에 의한 재원마련이라 할 수 있다.

(1) 영화발전기금의 활용을 통한 지원방안

영화발전기금은 기존 영화진흥기금을 대체한 것으로 2007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령」 개정을 통해 신설된 기금이다. 영화발전기금의 조성은 크게 다섯가지 방안(영비법 24조)을 통해 이루어지며, 주로 영화상영관 입장권을 통한 부과금을 통해 기금이 조성된다⁶⁾.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은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되었으며,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영화발전기금의 활용과 관련된 사항에서 살펴보면 동 기금의 경우 주로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과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기금의 용도 중 다른 용도와 달리 일부 용도에서는 영화관람자들의 편의증진(영화상업관 보수·유지 및 개선)과 문화적 빈곤의 대처를 위한 대안(장애인 등 소외계층 영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사업지원)들이 포함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영화산업을 위해 평생 노력한 영화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고령영화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하기 위해 새로운 기금을 만들거나 조성하는 데는 한계를 지닐 수 있어 우선적으로 영화발전기금의 지원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영화진흥위원회의 의결 등을 통해 고령영화인을 위한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지원방안이 마련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로 영화발전기금을 통한 장기적인 재원마련방안으로는 영화발전기금의 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운용수익의 일부를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영화발전기금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영화진흥위원회의 내부운용은 물론 장기적으로 복지재원으로 활용성도 높다 할 수 있다. 이자수입을 통한 활용은 궁극적으로 영화발전기금의 원금을 줄이지 않고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면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인다.

6) 첫째, 정부의 출연금, 둘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셋째,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넷째,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다섯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2) 영화산업 기업들의 사회공헌을 통한 복지재원 확보

현재의 영화산업은 제작, 배급, 극장운영을 동시에 진행하는 대기업 계열사(CJ 엔터테인먼트(CGV), 쇼박스, 롯데엔터테인먼트 등)들의 등장으로 대규모 제작비와 와이드릴리스 방식에 의한 영화개봉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2007년의 경우 지난 몇 년간에 비해 영화산업의 수익성이 낮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분석에 의할 경우, 2007년도 평균수익과 평균수익률은 각각 -17.92억원, -43.0%인 것으로 나타났다⁷⁾. 위와 같이 영화산업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화인들 간의 연대와 화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며, 따라서 수익을 낸 영화들을 통한 복지재원의 마련이 중요하다. 입장관객수를 기준으로 볼 경우 제작비가 약 30억원이 소요되는 영화의 경우 손익분기점은 약 100만 명 수준으로 보고 있다. 즉 손익분기점을 넘기고, 일정 수 이상의 관객이 동원된 영화의 경우 발생 수익의 일부를 복지금으로 모금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만약 30억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영화에 100만 명 이상의 관객이 동원된 경우, 100만 명을 초과하는 관객 수를 기준으로 수익의 일정비율을 복지재원으로 적립하는 방법이다⁸⁾. 적립방법은


수익이 발생한 관객수에 관계없이 일정비율을 부과하거나, 초과 관객수에 따라 누진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두 번째, 복지재원의 확보방안으로는 복지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되는 영화산업 종사자들의 자발적 부담이라 할 수 있다. 즉 영화산업 종사자로서 복지지원 프로그램을 수혜받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영화산업에 종사하고, 각 협회나 단체에의 가입을 우선적인 조건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복지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게 되는 영화인들의 경우, 영화제작 혹은 영화관련 근로를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의 일정부분(예를 들어 세전수입의 1%)을 복지재원으로 써 확보하는 방안이다. 동 방안의 경우 영화인들 스스로 복지재원을 마련한다는 자부심과 서로간의 부조를 통해 어려운 동료를 도울 수 있다는 부조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할 수 있다⁹⁾.

5. 결론

본 고에서 제시한 복지프로그램과 재원마련 방안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화산업 종사자들간의 협력과 복지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시기 여러 번의 복지지원마련을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하였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영화인들을 위한 복지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영화인 스스로의 노력과 외부적인 협력(다른 문화예술인 조직과의 협력 등)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고의 큰 한계는 고령영화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현재 현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청장년 영화인

들에 대한 실태와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영화산업의 다른 한축이라 할 수 있는 제작자, 극장, 배급업체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만남과 의견교환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다. 향후 영화인은 물론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복지제도를 구상시 본 고의 연구내용과 한계가 하나의 밑거름으로써 향후 좀 더 나은 발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7) 개봉영화 112편 중 수익을 낸 개봉영화는 13편에 불과함(이중 수익률이 50%를 넘은 것은 1편으로 나타남).
 8) 연구에 따라서는 영화산업 구조를 고려하여(대형 배급사가 극장을 겸하는 여건, 제작자에 비해 극장 측에 좀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목수정, 2007). 참고로 독일의 경우 문화예술인이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의 일부(30%)를 문화예술 상품으로 수익을 얻는 기업이 지원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인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일정비율(2007년 현재 4.9% 수준)을 별도로 적립하여 이를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9) 비정기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형 스타급 영화배우들이 영화산업을 위해 스스로 개런티의 일부를 복지재원으로 기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그러나 동 방안의 경우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할 수 있음.